

제 2 편 총 무 국

제 5 장 세무과

- 제1절 세무행정 관리
- 제2절 지방세입 관리
-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 제4절 세외수입 관리
- 제5절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제1절 세무행정 관리

1. 세입환경

가. 과세물건 현황

- 토 지 : 65.2km²【전 1.2 / 답 2.4 / 임야 39.4 / 대지 7.5 / 공장 0.7 / 기타 14.0km²】
- 건축물 : 100,763건【주 거 용 : 84,315건, 일 반 용 : 16,448건】
- 차 량 : 84,656대【승용 65,792 / 승합 4,352 / 화물 13,910 / 기타 602】
- 법 인 : 2,491개소【건설 502 / 제조 562 / 서비스 442 / 여객,화물 152 / 기타 833】
- 기 타 : 선박【64척】, 골프회원권【2,352명】, 면허건수【19,975건】

나. 세무공무원 기구 및 인력

- 기 구 : 8담당
- 담당별 분장사무
 - 세 무 관 리 : 세정기획 및 총괄, 세무조사, 구세(감면)조례
 - 재 산 세 : 재산세 과징, 현년도 체납액 정리, 세표, 증부세관련 업무
 - 취 득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징 및 현년도 체납액 정리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징 및 체납액정리
 - 자 동 차 세 :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과징
 - 세 입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과세표준액 결정
 - 체 납 정 리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납세증명 민원
 - 세외수입체납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통계
- 인 력 : 44명
- 구성현황 : 행정 3(5급1, 6급1, 8급1), 세무 40(6급9, 7~9급31), 사무운영 1

구분 \ 직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7	1	9	14	19	4
현 원	44	1	10	25	4	4
증 감	△3	0	1	11	△15	0

2. 지방세 과징 일반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보통세
		광역시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보통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나. 구민 1인당 담세액[1인당 담세액=결산시점의 징수액÷결산시점의 인구수]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인 구 수(명)	249,856	253,526	255,419	254,720	255,798
지방세액(천원)	172,482,935	151,514,520	158,201,436	150,427,311	146,678,116
담 세 액(천원)	690	598	619	591	573

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 부 방 법		납 기	비고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분	신고납부	◆ 등기·등록전	구세
		정기분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매년 7. 1. ~ 7. 31.	구세	
	균등분	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재산세	주택·건축물분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	구세	
	주택·토지분	보통징수	◆ 매년 9. 16. ~ 9. 30.		
자동차세	소유분	제1기분	보통징수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보통징수	◆ 매년 12. 16. ~ 12. 31.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구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소득분	소득세분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분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3. 지방세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법인, 백만원)

조사계획		조사 법인	추징 계		방문조사		서면조사		비율 (B/A)%
법인	세액(A)		법인	세액(B)	법인	세액	법인	세액	
53	570	53	36	331	12	238	24	93	58.1

나. 세무조사 운영

- 부동산 취득 법인 및 3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 취약 부분 기획조사로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
-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른 조사시기 조율로 법인 운영의 안정화

4.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근거규정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08.7.제정)

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2014.1.1기준 / 최근 3년간('11~'13년) 매년】

- 법 인 :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000만원 이상
- 개 인 :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00만원 이상

나. 우리구 성실납세자 선정 결과 : 전체 882명(법인 66명 / 개인 816명)

- 최고액 납세자
 - 법 인 : (주)000, 3년간 총 납부액 2,212백만원
 - 개 인 : 김 〇 〇, 3년간 총 납부액 1,414백만원
-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내용
 - 부산은행, 농협 등 市 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 적용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수수료 0.1% 경감

5.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운영

가.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리후렛 배부로 친서민 세정운영

-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등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내용 안내
-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도모

나. 납세고객 맞춤형 알리미 운영

- 취득세 신고·감면 등 납세 유형별 스마트 모바일 알리미 운영
-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감면액 추가납부 미연 방지 및 신뢰세정구현

제2절 지방세입 관리

1.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현년도 지방세	158,389	175,043	170,242	107.5	97.3		
지방세 현년도	시세	시세 소계	123,358	137,226	133,052	107.9	97.0
		취 득 세	39,874	46,746	46,461	116.5	99.4
		주 민 세	830	975	861	103.7	88.3
		자동차세	13,774	15,511	13,949	101.3	89.9
		레 저 세	16,470	16,488	16,488	100.1	100
		지방소득세	31,536	34,226	32,662	103.6	95.4
		지역자원시설세	3,260	3,429	3,343	102.5	97.5
		지방교육세	17,614	19,851	19,288	109.5	97.2
	구세	구세 소계	35,031	37,817	37,190	106.2	98.3
		등록면허세	4,821	5,449	5,412	112.3	99.3
		재 산 세	27,659	29,647	29,061	105.1	98.0
		주 민 세	2,370	2,526	2,522	106.4	99.8
		지방소득세	181	195	195	107.7	100

2.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

가. 시세입 동향

-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취득세입 감소
- 법인세 등 국세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입의 소폭 감소
-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市세입은 예년대비 평균 진도비 유지

나. 구세입 동향

- 취득세율 인하 및 부동산 경기회복 불확실로 세입 불안정성 전망
-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 및 주택관련 과표인상 등으로 세입 증가 예상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1. 체납세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과년도 총계	1,719	6,430	2,000	116.3	31.1
지 방 세					
과 년 도					
시 세	1,389	4,890	1,488	107.1	30.4
구 세	330	1,540	512	155.2	33.3

2.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시책

-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액정리 징수전담반 운영 : 19,470건 2,955백만원 전담
 -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 : 3,395건 3,065백만원 전담
 -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영치 기동팀 운영 : 4,469대 2,190백만원 영치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상반기(5-7월), 하반기(12-2월)
 - 내 용 : 5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제고
 - 직장인 체납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 금융자산 압류 : 금융연합회 계좌조회 및 예금압류
 - 지방세 및 국세 환급금 압류 : 환급금 압류 및 추심

나.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 독 촉 장 발 부 : 342,393건 268백만원 징수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16,670건 1,203백만원 징수
 - 차 량 번 호 판 영 치 : 4,469대 664백만원 징수
-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 40건 152백만원 징수

제4절 세외수입 관리

1. 세외수입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세외수입 총계	19,058	32,359	20,443	107.3	63.2	
현년도	시세외	648	2,244	2,178	336.1	97.1
	구세외	17,227	19,301	17,422	101.1	90.3
과년도	시세외	33	361	14	42.4	3.9
	구세외	1,150	10,453	829	72.1	7.9

2. 세외수입 세입운영

가. 세외수입 세입 극대화를 위한 추진시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극 운용(과태료 체납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최고 77%)
 -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500만원·1년이상 체납)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이상 체납)
-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
 - 부동산 공매 확행으로 체납액 환가 : 이행강제금
- 직장인 체납자 : 직장 조회 및 급여압류
-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년4회) 개최 및 부서별 체납정리실적 평가
- 분임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 교육 실시

나.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

- 재산압류 : 부동산 431건 207백만원, 차량 4,713건 992백만원
- 급여 압류 및 환가 : 616건 60백만원 징수
- 세외수입 고액체납자(500만원이상) 정리계획에 의거 징수체계 구축 운영

다. 세외수입 과징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 세외수입 간단e납부 시행 ⇒ 2013.12월부터 시행, 서비스 확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이 관한 법률 제정 ⇒ 2013.8.7 제정, 2014.8.6 시행

제5절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1.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조사 및 산정		공 시		비 고
	주택수	주택가격	주택수	주택가격	
2014년	17,693	1,717,208	16,793	1,682,278	
2013년	17,891	1,632,724	16,869	1,591,093	
증감비율	-1.1%	5.1%	-0.4%	5.7%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공시 체계 구축

- 2014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 총 17,693호 산정 16,793호 공시
- 기타 물건 가격 조사 : 건물 시가표준액, 골프회원권 등 10종
- 2014년 차질 없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추진사항
 - 주택특성 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 2회(1.1기준, 6.1.기준)
 - 전년대비 11%이상 가격 증감 주택 조사 및 분석 : 총395호
 - 비교표준주택 선정 : 807호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 총2회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건
- 주택가격 열람 민원을 위한 편의시책
 - 주택가격현황도면을 활용한 입체적 민원서비스 제공
 - 주택가격 민원상담 전용 창구 운영 : 3회, 3개월간 운영
 - 재산세 과징과 연계한 민원처리 일원화로 대민 신뢰도 제고

3. 주택가격 산정체계의 효율적 개선

- 정확한 부동산 가치를 적기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선
- 건물 과표의 수시조정을 통한 실거래가의 적시 반영
- 시설물 및 기타 물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도면 전산 처리 및 항공·영상자료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